

대 법 원

제 2 부

판 결

사 건 2025다213795 소유권이전등기

원고(준재심피고), 상고인

○○○씨 △△△파 □□중중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주(담당변호사 강구태 외 1인)

피고(준재심원고), 피상고인

망 ◇◇◇의 소송수계인 피고(준재심원고) 1 외 1인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남

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5. 5. 29. 선고 2023재나2035 판결

판 결 선 고 2026. 2. 26.

주 문

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.

이 유

1.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.

가. 원고(준재심피고, 이하 '원고'라고 한다)는 ◇◇◇(원심판결 선고 이후 사망하여

그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. 이하 '망인'이라고 한다)을 상대로 원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(이하 '이 사건 각 토지'라고 한다) 중 1/3 지분에 관하여 소장 부분 송달 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.

나. 제1심(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가단9836)은 2014. 10. 15.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자 선출결의 및 소 제기를 위한 적법한 총회결의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(이하 '제1심판결'이라고 한다).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.

다. 항소심(대전지방법원 2014나15963)은 2015. 6. 8. '망인은 2015. 7. 31.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자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1/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.'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, 그 무렵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(이하 '준재심대상결정'이라고 한다).

라. 망인은 2017. 1. 25. 원고에게 준재심대상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1/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.

2. 원심의 판단

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. 준재심대상사건의 소 제기를 위한 원고의 적법한 총회결의가 없었고, 준재심대상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면 소 각하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었다. 그런데도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준재심대상결정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지 않았다. 따라서 준재심대상결정에 원고의 대리권 흠결이 있고 망인이 이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61조,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준재심사유가 존재한다.

3. 대법원의 판단

가.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 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표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 측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, 그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고, 여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위와 같은 대표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의 판결이 중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(대법원 2000. 12. 22. 선고 2000재다513 판결 등 참조). 대표권의 흠결로 소 각하의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대표권 흠결의 직접적 법률효과에 불과할 뿐 '종전의 판결이 중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'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.

나.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. 망인이 원고의 대리권의 흠결을 준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대리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준재심대상결정이 중국적으로 망인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. 따라서 망인이 원고의 대리권의 흠결을 준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면, 원고 대표자의 대표권 흠결이나 소 제기의 특별수권 흠결을 제외하더라도 준재심대상결정이 중국적으로 망인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인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.

다.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·판단 없이 준재심대상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면 제1심판결과 같이 소 각하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망인이 원고의 대리권 흠결을 준재심사유로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.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, 제

451조 제1항 제3호의 준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.

4. 결론

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다시 심리·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	대법관	엄상필
	대법관	천대엽
주 심	대법관	오경미
	대법관	권영준